

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사진 3.5cm×4.5cm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전자우편주소			
	직장명	우편물 수령 []자택 []직장 []직접수령			
	주소 (자택) (직장)			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 제 - 호	
신청영역	[]의료사회복지사		[]학교사회복지사		
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	기간	수련기관	수련지도자		
			성명	사회복지사 1급 자격번호	
	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번호				

1. 본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. (확인 [])

<결격사유>

1. 피성년후견인
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
3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
5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의3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×4.5cm) 2장	수수료 1만원
------	--	------------

※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릅니다.

처리 절차		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자격증 제작	→	발급
처리기관: 한국사회복지사협회										